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 이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84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준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7. 1.

다. 회 부 일 : 2026.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치부를 폭로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해자가 해당 정보로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게재자에 대하여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사이버 렉카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2제9항 신설, 제70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제5호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 필요적 몰수·추징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게재자의 정보에 대하여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및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대상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며(안 제44조의12제8항후단 및 제9항 신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 ⑦ (생략)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현행	개정안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신설>	----- ----- ----- ----- ----- . 다만, 제9항에 따라 제3항제3호·제4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재자의 정보와 관련하여 제7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게재자의 정보에 대하여 제3항제3호·제4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0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7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의---- ----- ----- ----- . ----- ----- ----- .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의2. (생략) <u><신설></u> 6. ~ 12. (생략) ③ ~ ⑤ (생략)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5의2. (현행과 같음) <u>5의3. 제44조의12제9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u> 6. ~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논란 등을 자극적으로 다루는 정보를 게재하여 조회수·광고수익 등을 얻는 이른바 ‘사이버택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 특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

하는 경우 형사처벌 이후에도 해당 정보에서 수익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44조의12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접근차단, 게재자 계정의 정지·해지와 함께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및 금전 지급의 중지·종료·회수 등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그러나, 언론의 공익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된 정보의 삭제·접근차단·정보노출 제한(제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호), 계정의 정지·해지(제2호), 수익화 제한(제3호), 금전 지급 제한(제4호) 및 서비스 중지·종료(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 제70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²⁾,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³⁾,

같은 조 제4항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는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수익화 제한 및 금전 지급 제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언론사 등에 대해서도 수익화 제한 및 금전 지급 제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또한,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이 영리를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사이버 명예훼손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차단하면서 몰수·추징을 통해 이미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박탈하여 사실적시·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을 범하는 사이버랙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안 제44조의12제9항에 따라 수익화 제한 및 금전 지급 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각 정보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4조의12제9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죄판결의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개별 게재자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여부와 그 확정일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원 등 관계기관이 확정판결 사실을 통보하거나 당사자가 일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의 조치 기간 또한 유죄판결 확정일이 아닌 해당 통보 또는 확인이 이루어진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둘째, 안 제44조의12제8항 단서는 게재자가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인 경우에도 게재한 정보에 대하여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수익화 제한 및 금전 지급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사 등에 대해서 해당 조치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 제44조의12제8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현행법 제44조의12제8항은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⁴⁾, 이는 각 조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 등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저

4)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언론사 등에 대해서 수익화 제한 및 금전 지급 제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현재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 자체를 폐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는 점⁵⁾을 고려할 때, 안 제70조제4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 폐지 문제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수정수용

- 사이버 명예훼손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게재자의 광고 수익화 제한 의무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업자가 유죄판결 확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제한의 대상·범위·기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언론사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공익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안으로 의안번호 제2215933(이주희의원), 의안번호 제2216651호(이용우의원), 의안번호 제2219638(황운하의원)이 있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영리 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몰수
·추징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관련 범죄의 폐지 입법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8